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1/ 28 통권 176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6년 시행 개정 조세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목 차

▶ 2026년 개정세법 내용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 항목 엄선	p.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p.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p.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p.27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p.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p.3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p.3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p.41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p. 40

AnSe, Creates the Best Answer

eAnSe.com

의 30분 내 Q&A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2026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법인 55)
- 사업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함(법인 24)
-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부가 6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제작비용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조특법 25조의6)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조특법 25조의8)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시 손비계상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산입이 가능(조특 제28조의5)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허용(조특 13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금액을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추가 상향조정함(조특 126의2)
- 배당성향, 배당금액증가 등 요건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토증 104의27)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
● 제3조[납세의무자] ①·② (생략)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생략) ●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생략)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생략) ② (생략) 1.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제3조[납세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익금의 범위]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현행	개정
③ (생략)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④ ~ ⑥ (생략)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1. ~ 8.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

현행	개정																																								
2. (생략) ③ ~ ⑥ (생략) ●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9</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 </tbody> </table>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19</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tr> </tbody> </table> ② (생략)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생략) <table border="1"> <tr> <td>공제한도금액 =</td> <td>$A \times \frac{B}{C}$</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9</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td></tr> </tbody> </table>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td></tr> </tbody> </table> ② (현행과 같음)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r> <td>공제한도금액 =</td> <td>$A \times \frac{B}{C}$</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현행	개정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

현행	개정
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 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 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생략)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생략) ④ ~ ⑦ (생략)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생략) ② (생략)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손금에 산입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
③ ~ ⑥ (생략)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생략) ② (생략)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 ④ (생략)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생략)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



현행	개정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 마. (생략) 3. ~ 9. (생략) 10. (생략) 가. 나. (생략)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 카. (생략) ●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가. 삭제 나. ~ 마.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라. ~ 카. (현행과 같음) ●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현행	개정
~ ③ (생략) <u><신설></u>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를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를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신설>	같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라. (생략)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 사.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라. (생략)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 사.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u>사무직원이 학교</u>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 러. (생략)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생략)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처. (생략) 4. (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생략)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 3) (생략)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생략) 자. (생략) ● 제17조【배당소득】 ①·②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략) ④ ~ ⑥ (생략)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u>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u>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 러. (현행과 같음) 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u>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u> 이내의 금액 버. ~ 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u>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u> 이내의 금액 5)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 제17조【배당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u>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u>종합소득산출세액</u>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u>종합소득산출세액</u>에서 공제하는 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가. ~ 라. (생략) <신설>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u>종합소득금액</u> 또는 <u>퇴직소득금액</u>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u> 또는 <u>퇴직소득 산출세액</u>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u>종합소득산출세액</u> 또는 <u>퇴직소득 산출세액</u>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종합소득산출세액</u> 또는 <u>퇴직소득 산출세액</u>에서 공제하는 금액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현행	개정
2. (생략) 3. 기본공제대상자인 <u>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 다. (생략) ④ ~ ⑪ (생략)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생략)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③ ~ ⑤ (생략) ●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u>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u>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④ (생략)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생략) ③ (생략)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2. (현행과 같음) 3. 기본공제대상자인 <u>장애인을</u>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u>납세지 관할</u>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달



현행	개정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생략) ④ ~ ⑥ (생략) ● 제96조[양도가액] ①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1. (생략)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신설> <신설>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96조[양도가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

현행	개정												
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 ⑥ (생략)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table border="1"> <tr> <th>양도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3억원 이하</td><td>20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td><td>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td></tr> </table> ● 제118조의12【조정공제】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계산식 생략) ② (생략)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table border="1"> <tr> <th>양도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3억원 이하</td><td>20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td><td>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td></tr> </table>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퍼센트 ● 제118조의12【조정공제】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계산식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현행	개정
● 제118조의13【<u>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u>】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계산식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생략) ● 제118조의14【<u>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u>】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다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략) ● 제129조【<u>원천징수세율</u>】① (생략) ~ 5. (생략) 5의2. (생략) (생략) - 삭제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u>100분의 4</u> 5의3. (생략) (생략)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u>초과하는</u>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u><신설></u> ~ 8. (생략) ② ~ ⑤ (생략) -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 제118조의13【<u>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u>】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 제118조의14【<u>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u>】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다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29조【<u>원천징수세율</u>】① (현행과 같음) ~ 5. (현행과 같음) 5의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삭제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u>100분의 3</u> 5의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u>초과하고 20년 이하인</u>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현행	개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u>공제한도금액</u>”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u>공제한도금액</u>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u>공제한도금액</u>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u>공제한도금액</u>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u>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u>”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u>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u>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u>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u>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u>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u>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u>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u>”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27조제1항제1호의 소득: 제1항제1호 라목의 세율 나. 제127조제1항제5호의 소득: 제1항제5호의2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의 세율 다. 제127조제1항제6호의 소득: 제1항제6호 나목의 세율 라. 제127조제1항제7호의 소득: 제1항제7호의 세율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u>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u>”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u>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u>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현	행	개	정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⑩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
	<신 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이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

현행	개정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② (생략)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현행	개정
<u><신 설></u> <u><신 설></u> ③ ~ ⑥ (생략) ● 제162조의3【<u>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u> 등】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④ ~ ⑨ (생략) ● 제174조의2【<u>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u>】(생략) 1. 2. (생략)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을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1조【<u>시행일</u>】(생략) 1. ~ 4. (생략)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 2026년 1월 1일	<u>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u>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162조의3【<u>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u> 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 제174조의2【<u>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u>】(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을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1조【<u>시행일</u>】(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 2027년 1월 1일

현행	개정
●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생략)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2026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2026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57조의2제1항·제2항(퇴직소득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 2026년 7월 1일 -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 2027년 1월 1일 제2조[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제2항(퇴직소득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제9조【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배당가산을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 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안 제8조의3)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안 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안 제71조의2제1항).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안 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 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충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충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1)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안 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안 제99조의15)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6)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조특법 개정의 대부분은 적용 일몰기간 3년 연장임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조문 개정 적용됨 : 게재 생략)

제7조, 제7조의4, 제8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3,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7조, 제29조의4, 제29조의8,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72조, 제74조, 제77조의3, 제85조의6, 제85조의8,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의2, 제96조, 제96조의3, 제98조의9, 제99조의9, 제99조의10, 제100조의32, 제104조의5, 제104조의31,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의2, 제108조, 제117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제126조의3, 제136조, 제140조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둘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생략)		●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 제60조【가산세】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 6. (생략)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 ⑩ (생략) ● 제74조【질문·조사】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u>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60조【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3. ~ 6.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 ⑩ (현행과 같음) ● 제74조【질문·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생략)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u>상속인과 그 직계비속</u>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u>상속인 및 직계비속</u>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생략) ●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생략)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u>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u>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u>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u>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정



현행	개정
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② (생략)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④ (생략)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2. (생략) ② ~ ⑤ (생략) ●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u>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u>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u>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u>

현행	개정
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식 생략) ② ~ ⑥ (생략) ●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출연재산가액</u>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 나. (생략) 8.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④ ~ ⑩ (생략)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u>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u>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⑫ ~ ⑭ (생략)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u>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u>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u>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u>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출연받은 재산의 가액</u>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 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u>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u>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u>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u>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⑫ ~ ⑭ (현행과 같음)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u>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u>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u>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u>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6. (생략) ② ~ ④ (생략)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
●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 제7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	●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

현행	개정
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 (생략) ● 제12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 (생략) ●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유치원·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 (현행과 같음) ● 제12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2. (현행과 같음) ●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유치원·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현행	개정
2. (생략)	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화명	1월 16일 (금)	1월 19일 (월)	1월 20일 (화)	1월 21일 (수)	1월 22일 (목)
미 달러 (USD)	1469.70	1473.50	1473.60	1477.00	1472.80
일본 엔 (JPY)	926.52	934.58	931.74	934.01	930.41
영국 파운드 (GBP)	1966.46	1971.40	1977.79	1985.46	1977.90
캐나다 달러 (CAD)	1058.21	1059.16	1062.40	1067.31	1064.58
홍콩 달러 (HKD)	188.48	188.96	189.00	189.38	188.89
위안화 (CNH)	211.18	211.63	211.87	212.48	211.43
유로화 (EUR)	1706.10	1709.55	1715.79	1731.71	1720.89
호주 달러 (AUD)	984.77	984.22	989.15	994.69	995.32
싱가폴 달러 (SGD)	1141.12	1143.31	1146.73	1150.45	1146.46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62.49	363.15	363.40	364.29	363.9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 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
●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나.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생략) <신설>	●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현행과 같음)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제5호·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현행	개정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저울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8. (생략) ② (생략) ●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현행과 같음) 17. “저울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현행	개정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⑦ (생략)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신 설> <신 설> <신 설>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신 설>	
●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 ●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 조세의 계산】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
●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times B) + C$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현행	개정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울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 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	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



현행	개정
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조 및 제81조에 따라 <u>그</u>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생략) ② (생략) ●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식 생략) ② (생략)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times B) + C - D$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times B) + C - D$

현행	개정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용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④·⑤ (생략) ⑥ (생략) 1. (생략)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 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times B) + C$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 추가세액비용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 내국추가세액가산액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 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



현	행	개	정
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u>추가세액</u> 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u> 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u>추가세액</u> 및 <u>내국추가세액</u> 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최소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 제81조【최소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u>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